

인천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24183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22. 12. 14.

판결 선고 2023.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50,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592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1. 29. 'C은 원고에게 48,850,220원과 이에 대한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C 및 피고는 2020. 4.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변제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채무자는 관련 소송인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5923 대여금 판결문에 따른 배상금, 변호사보수비용, 소송비용 등 채권자의 일체 손해금액으로 총 (29,000,000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국민은행 예금주 A)로 입금한다.
2. 채무자는 위 29,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매달 말일까지 매월 50만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여건에 따라 매월 추가금을 위 피해자가 지정하는 제1항 기재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3. 만약 채무자가 위 제2항 기재 매월 변제금을 약속한 날짜에 1회라도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나머지 미변제금액 전액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고,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연대보증인 B는 채무자의 위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변제 총 금액 29,000,000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뜻을 확인하며, 채무자가 제3항 기재와 같이 약속한 변제기일에 1회라도 입금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전액에 대한 변제책임을 연대보증인도 함께 전액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있음을 확인한다.
5.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민, 형사 소송 등에 어떠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변제확약서와 같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이 사건

판결금 48,850,022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녹취서 내용 등)를 종합하면,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범위는 이 사건 변제확약서 제4항의 문언과 같이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확약서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5. 1.부터 이 사건 변제확약서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임택준